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·보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을 개정(안 제30조)

나.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64조)

다.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(안 별표 3)

라.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개정(안 별표 19)

마.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장례시설로 명칭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[2017. 9. 21. ~ 10. 11]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·보완하여 도시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예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안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,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, 별표3을 개정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하고, 별표19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